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18

발의연월일: 2021. 2. 4.

발 의 자:소병철・송기헌・김정호

신동근 • 백혜련 • 임호선

김승남 • 진성준 • 이학영

양향자 • 민병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시책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거나, 임대료 지원 또는 대출이자 감면 등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원시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감염병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상 손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과임대료지원·대출이자 감면·세제감면·사회보험료 감면·공과금 감면 등 대통령령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9조제1

항).

법률 제 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를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고, 피해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자금의 융자
- 2.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 3. 융자금의 이자감면
-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 지원 확대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상 심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임대료 지원·대출이자 감면 ·세제 감면·사회보험료 감면·공과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

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의 종류, 기간 및 업종을 고려한 피해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④ 그 밖에 재난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영업상 심대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u> </u>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	
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	
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u>예방·대비</u>	예방·대비
·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	·대응·복구에 필요한 시책을
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고, 피해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u>수 있다</u> .
<u><신 설></u>	<u>1. 자금의 융자</u>
<u><신 설></u>	2.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
	기간 연장
<u><신 설></u>	3. 융자금의 이자감면
<u><신 설></u>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
	5조의5에 따른 재보증 지원
	<u>확대</u>
<u><신 설></u>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
	<u> 상공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u>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신 설>

<신 설>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 치를 받아 영업상 심대한 손실 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 우 그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 하고, 임대료 지원·대출이자 감면·세제 감면·사회보험료 감면 ·공과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의 종류, 기간 및 업종을 고려한 피해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u>④ 그 밖에 재난 피해 지원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